

검 토 의 건 서

- 일 시 : 2020. 9. 3.(목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(1643)

평 생 교 육 국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643호)

-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3호,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
-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,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‘소외계층’이라는 차별적 표현을 ‘취약계층’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내용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0. 9. 3.

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